「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 률 번 호: 주석령 [1995] 제50호
- 제 정 일: 1995년 6월 30일
- 공 포 일: 1995년 6월 30일
- 시 행 일: 1995년10월 1일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이 규정하는 담보의 형식은 보증·저당·질권·유치·보증금이다. 신용대출·매매·화물운수·가공도급 등의 경제활동 중에 채권인이 담보 형식으로 채권의 실현 보장이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3자가 채무인을 위하여 채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무인이 역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에서의 보증이란 보증인과 채권인이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책임을 질 것을 보증하도록 약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기관은 보증인이 될 수 없으나 국무원 비준을 거쳐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조직에 차

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학교·유아원·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기관·사회단체·기업법인의 지사·직능 부서는 보증인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은행 등 금융기구 또는 기업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도록 강제로 명령할 수 없으며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이 약정하는 보증액수에 따라 보증 책임을 진다.

보증인과 채권인은 서면형식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보증의 형식은 일반 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있다.

보증기간에 채권인이 법에 의거하여 주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보증인은 원보증담보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보증책임을 지고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주채권의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다. 동일한 채권에 보증도 있고 또한 물적 담보도 있는 경우 보증인은 물적담보에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며 채권인이 물적담보를 포기한 경우 보증인은 채권인이 권리를 포기한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이 면제된다.

저당이란 채무인 또는 제삼자가 이 법 제34조에서 열거하는 재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당해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재산을 가격환산 또는 경매·매각의 방식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인이 담보하는 채권은 당해 저당물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재산을 저당한 후 당해 재산의 가치는 채권을 담보하는 잉여액부분보다 많아야 하며 재차 저당할 수 있으나 단, 그 잉여액부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저당인과 저당권자는 서면의 형식으로 저당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 법 제 42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저당한 경우 저당물 등기를 해야 하며 저당계약은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채무이행기간의 만료되었음에도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당물이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차압된 경우 차압일로부터 저당권자는 저당물에서 분리된 천연수익 및 저당인이 저당물에 대하여 수취할 수 있는 법정수익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차압한 사실을 법정이익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해당 수익에 미치지 아니 한다. 저당권은 채권인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기타 채권의 담보로 삼아서는 안된다. 저당권과 당해 담보의 채권은 동시에 존재하며 채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 역시 소멸된다.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저당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경우 저당인과 협의하여 저당물의 가격환산 또는 경매·매각의 방식으로 획득한 대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저당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시부동산 저당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상에 증설된 건물은 저당물에 속하지 않으며 구획에 의한 국유토지사용권을 경매하여 획득한 대금은 법에 의거하여 납입해야 하는 토지사용권 양도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납입한 후에 저당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채무인에게 저당담보를 제공한 제삼자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현한 후 채무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되면 따라서 소멸되며 멸실로 획득한 배상금은 저당재산으로 간주한다. 최고액 저당이란 저당인과 저당권자가 최고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저당물로써 일정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담보로 간주하는 것을 약정하는 행위이다.

이 법에서의 동산질권이란 채무인 또는 제삼자가 동산을 채권인이 점유하도록 이전하고 당해 동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시 채권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동산을 가격환산하거나 또는 경매·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채무인에게 질권을 담보한 제3자는 질권자가 질권을 실현한 후에 채무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질권은 질물의 멸실로써 따라서 소멸되고 멸실로 획득한 배상금은 피질권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질권과 담보한 채권은 동시에 존재하며 채권이 소멸되면 질권도 역시 소멸된다.

(一)환어음·수표·약속어음·채권·예탁증서·창고증권·선하증권,

(二)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주식·주권,

(三)법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는 상표 전용권·특허권·저작권 중의 재산권,

(四)법에 의거하여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타의 권리 등은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질권계약은 등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질권으로 설정한 후 피질권인은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허가할 수 없으나 피질권인과 질권인이 협상하여 동의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도록 양도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유치란 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채권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채무인의 동산을 점유했으나 채무인이 계약의 약정된 기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재

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당해 재산으로 가격환산하거나 또는 당해 재산을 경매·매각한 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치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이자·위약금·손해배상금·유치물 보관비용과 유치권 실현비용을 포함하며 보관계약·운수계약·가공도급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인은 유치권이 있고 당사자는 계약 중에 유치할 수 없는 물건을 약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타방에게 채권의 담보로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할 수 있고 보증금은 서면의 형식으로 약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보증금 계약 중에 보증금을 교부하는 기한을 약정해야 한다. 보증금 계약은 실제 보증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액수는 주계약대상액수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원문	번역문
第一章　总则	제1장 총칙
第二章　保证	제2장 보증
第一节　保证和保证人	제1절 보증과 보증인
第二节　保证合同和保证方式	제2절 보증계약과 보증형식
第三节　保证责任	제3절 보증책임
第三章　抵押	제3장 저당
第一节　抵押和抵押物	제1절 저당과 저당물
第二节　抵押合同和抵押物登记	제2절 저당계약과 저당물 등기
第三节　抵押的效力	제3절 저당의 효력
第四节　抵押权的实现	제4절 저당권의 실현

第五节　最高额抵押	제5절 최고액 저당
第四章　质押	제4장 질권
第一节　动产质押	제1절 동산질권
第二节　权利质押	제2절 권리의 질권
第五章　留置	제5장 유치
第六章　定金	제6장 보증금
第七章　附则	제7장 부칙